예 산 총 칙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999,202,547	89,971,000
일반회계			2,595,228,598	77,856,000
	일반회계		2,595,228,598	77,856,000
특별회계			403,973,949	12,115,000
	공기업특별회계		185,878,935	5,576,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85,878,935	5,576,000
	기타특별회계		218,095,014	6,539,000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9,826,866	294,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0,117,081	5,103,000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5,147,564	454,0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399,000	161,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524,503	135,000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13,080,000	392,000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679,552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5,8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